교육부

반도체 특성화 대학 지원 사업 기본계획(안)

2023. 3.

교 육 부

[인재정책실]

차 례

Ⅰ. 추진 배경 ····· 1

Ⅱ. 비전 및 전략 ····· 2

Ⅲ. 추진 방안 ····· 4

Ⅳ. 평가 및 선정계획 ····· 9

Ⅴ. 사업관리 및 향후 일정(안) ····· 11

Ⅵ. 반도체특성화대학 지정 절차 안내 ····· 15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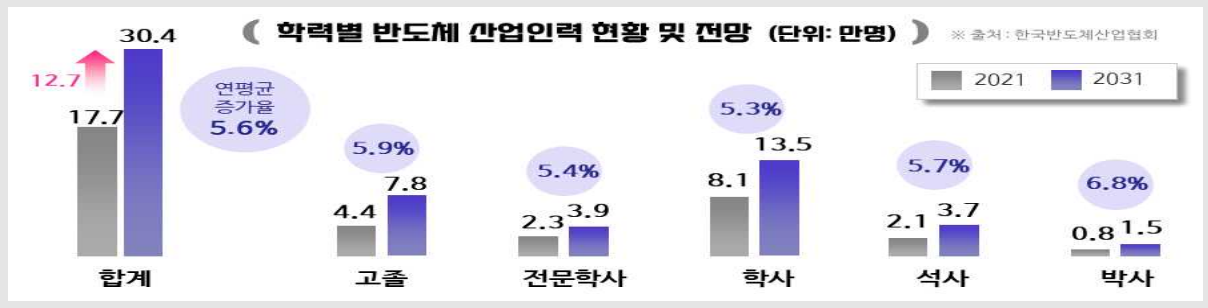
Ⅰ 추진 배경

□ 반도체 인력수요 현황

○ **반도체 산업**의 **지속적 성장** 및 **경제안보적 중요성 부각**에도, 반도체 기업의 **만성적 인력부족, 양적·질적 미스매치** 문제 지속

※ 향후 10년간('22~'31) 반도체 산업인력 추가 수요: 12.7만명('22, 반도체산업협회)

○ 산업계의 수요가 큰 **학사급 인재 배출** 및 **수요가 급증하는 석·박사 인력양성 기반**으로서 **대학(학부) 단계 인력양성 혁신 필요**



□ 대학의 반도체 인재양성 현황 및 문제점

○ 반도체 산업은 **다양한 공정(Value Chain)의 기술**인재를 필요로 하나, **대학 내** 이를 **뒷받침할 기반**(학과, 교육과정, 교원, 장비 등) **미흡**

※ 반도체 관련 학과(5개 소계열 ① 반도체 세라믹, ②전자·기전(공학), ③신소재(공학), ④재료(공학), ⑤기계(공학)), 연간 신규 졸업생 중 반도체 기업 취업률은 10% 미만

○ 반도체 등 첨단분야를 중심으로 **규제완화**(정원, 교원 등) 등 **제도 개선이 진행 중**이나, **대학 자체 투자 한계, 경직적 학사운영 지속**

○ 대학-기업 간 협약을 통한 **계약학과 운영이 확대**되고 있으나, **융복합적 인재**의 **안정적 육성***, **학문후속세대 양성**** 등에 제약

* 반도체 산업의 지속성을 위해 **다양한 분야 중견중소기업 인재의 안정적 공급체계** 구축이 필수적

** 반도체 전공 석·박사: '17년(143명)→'18년(135명)→'19년(92명)/반도체 산업인력 실태조사, 2020

☞ 반도체 인재양성을 위한 **'역량'과 '의지'를 갖춘 대학을 집중 육성하여 안정적 학부교육 기반 구축**

☞ 대학이 반도체 인재양성을 위한 **△도전적 투자, △다각적 기업 협업, △학사운영 개선 등을 시도**하도록 지원하여 **성공사례 축적·확산 추진**

II 비전 및 전략

1 비전 및 목표

비전 초격차를 확보할 반도체 전문 인재 양성

목표 반도체 분야 인재양성 규모 및 질 제고

전략
- 단독형 · 동반성장형 육성
- 대학별 분야 특화 추진
- 양적 · 질적 성과 관리 강화
- 지속가능한 대학 운영 지원

내용 반도체 특성화 인재양성 대학모델 집중 육성

학과·전공 등 추진체계 구축	▪ 대학별 반도체 인재양성 목표 설정(분야, 규모) ▪ 학과 • 전공 운영 등 이행계획 수립, 사업 추진 체계 구축
특성화 교육과정 운영	▪ 기초교육 강화 및 다양한 학문 간 융복합 강화 ▪ 기업 참여 및 협업을 통한 교육과정 개발, 운영
교원, 시설 등 인프라 개선	▪ 현장경험, 전문성 높은 우수교원 확보 및 활용 ▪ 반도체 교육 · 연구, 실습을 위한 환경 구축
탄력적 학사 운영	▪ 학교 밖 일·학습 경험 학점 인정 확대 ▪ 교원 인사제도 운영 개선(산학협력, 혁신적 수업 독려)
취업 및 진학 지원	▪ 반도체 기업 취업 연계 지원 ▪ 우수학생 유치 및 대학원 진학 등 연구역량 강화

협업

3. 우수교원 확보 및 교육/실습 환경 구축

□ 우수교원 확보 및 활용

○ **산업체 경력** 및 **높은 전문성**(연구 및 기술개발 실적 등)을 가진 **우수 인력을 교원**(전임교원, 겸·초빙교원, 강사)**으로 채용·활용**

※ **(국가첨단전략산업법 개정, '23.7.1 시행)** 반도체 등 국가첨단전략산업분야 △강사, 겸임·초빙교원 등 임용 시 자격요건 완화, △전임교원의 겸임·겸직 제한 완화

※ 기업 현장, 교육, 연구 간 연계 강화를 위해 **'현직 산업계 전문가'**를 **대학의 '전임교원'으로 채용**하기 위한 **대학 내 관련 규정 개정 등 혁신적 시도** 권장

○ **교원채용 이외에도** 해외·산업계 전문가 등을 **교육·연구, 실습 등에 안정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다각적인 방안* 모색**

* (예시) 반도체 기업 사내교육/OJT 프로그램과 연계한 기업 인적자원 활용 등

□ 반도체 교육·연구, 실습 환경 구축

○ 대학별 **특성화 분야 중심**으로, **반도체 주요 공정을 실습**할 수 있는 **클린룸 등 전용공간**과 **프로젝트 공간**(세미나실 등), **교육장비 구축**

< 주요 공정/분야별 필요 장비(예시) >

설계	EDA Tool, 워크스테이션 서버 등
소자/공정 소·부·장	항온항습, 공조시설, 배기가스 배출시설 등을 갖춘 클린룸
	Furance, RTP, Baker, Aligner, Coater, Etcher, Evaporator, Sputter, CMP 등
테스트/패키징	Probe Station, Bonder, Particle analyzer 등

※ 3천만원 이상의 연구시설·장비 구축 시 전문기관에서 구성한 장비심의위원회를 통해 심의 타당성 평가 진행 후 구축 결과를 관련 시스템(ZEUS)에 등록·관리

○ **반도체 교육·연구를 위한 시설, 장비 운영·관리체계 구축**(인력 포함), 실험·실습(현장실습 포함) **위험관리 및 안전관리 대책 마련**

4. 탄력적인 학사 및 교원 인사제도 운영

□ 학교 밖 일·학습 경험, 활동 학점 연계

○ 대학 내 정규교육과정 외에도 **반도체 인재양성 관련 다양한 일·학습경험의 학점 인정**을 **확대**할 수 있도록 **학칙 등 개정**

* (예시) 기업 또는 관련기관에서 운영하는 반도체 분야 단기집중 교육훈련 프로그램 이수를 일정 조건 하에서 대학의 관련 교과 학점으로 인정

○ **동반성장형**의 경우, **대학별 강점, 보유 자원을 중심**으로 **대학 간 교육과정 공동운영, 교류 활성화**를 위한 **학사제도 및 운영 개선**

※ 구체적 운영모델 및 방식은 **대학별 여건 및 협약에 따라 다양하게 적용 가능하나, 이행계획의 수립 및 운영관리를 위한 긴밀한 협업체계 구축 필수**

< 동반성장형 참여대학 요건(학칙 개정 등) **>**

❶ **학생들의 교과목 선택권 확대:** (예시) 과목별 수강인원 확대, 계절학기 학점 제한 완화, 유연(집중)학기 도입 등

❷ **대학 간 학사제도 상호개방:** (예시) 학점교류 시, 수강신청 인원 수 및 학점 제한 완화, 정규/계절학기 운영 제한 완화, **인증서 및 학위 공동수여 방안 마련**

※ **대학 간 공동학과 설치**를 통한, 공동 교육과정 운영, **공동/복수 학위수여 등 가능**

- **단, 공동학과 설치의 경우,** 공동학위 부여를 위한 **신입생 선발**은 **대학·학생정원 조정 계획 등에** 따라 **'25학년 이후 신입생부터 선발 가능**)

❸ **대학별 인적, 물적 자원 공동 활용(대학 간 이동수업, 교환학기제 등 활용)**

- (예시) **A, B 대학 간 융합전공과정 공동개설, 운영**(A대학 설계 특화 교과목 운영, B대학 소부장 특화 교과목 운영) ⇒ 반도체 전공 **공동 또는 복수 학위 수여**

※ **(수도권- 비수도권 연합 고려사항) 기업 분포 등을 고려**하여 **실습교육 등을 대학협업 기업에서 공동으로 실시**하는 **교환학기제, 이동수업, 현장실습 등 활용 가능**

※ 대학 간 이동수업 및 교환학기제 등 활용(예시)

1~2학년(기초이론)			3학년(이론, 실습)			4학년(실습)	
교육 내용	입문 및 초급 수준의 반도체 **이론 교육**	⇨	**교육 내용**	중급 수준의 반도체 **이론 및 실습 교육**	⇨	**교육 내용**	반도체 세부 분야별 **이론 및 실습 교육, 현장실습교육**
교육 장소	본교 또는 **세부분야 특화대학**		**교육 장소**	본교 또는 **시설장비 구축대학**		**교육 장소**	본교 또는 **협업 기업**
교육 방식	온라인 오프라인		**교육 방식**	온라인 오프라인		**교육 방식**	온라인 오프라인 **현장실습**

□ 교원 인사제도 운영 개선

○ 다양한 산업계 인사의 교육 참여, 현장연계 수업 활성화, 혁신적인 교수법 시도를 독려할 수 있도록 **교원 수업시수**의 **탄력적 운영**

* (예시) **강의규모, 강의의 질**(혁신적인 교수법 시도, 현장 연계 강화)을 고려한 **수업시수 산정 방식 마련, 온라인 강의 시수 인정 방식 다양화** 등

○ **산학협력 실적** 및 **산업체 경력**이 **교원업적평가**와 **채용 과정**에서 **실질적으로 반영 확대**될 수 있도록 운영 개선

※ **교원 자격기준 및 채용조건, 교원업적평가 등 관련 대학 내 규정 개선 등**

5. 반도체 분야 취업 및 진학(대학원) 활성화

□ 반도체 관련 기업 취업 연계 지원

○ **기업 협업 교육과정** 개발·운영, 인턴십, **기업 협업 프로젝트 참여 인증** 등으로 **학생들의 실질적 취업 연계·지원**

□ 우수학생 유치 및 대학원 진학 등 연구역량 육성 지원

○ **우수학생 유치**를 위한 **장학금** 등 지원, 반도체 **특성화 교육 이수 학생**의 **대학원 진학 지원** 등 **학문 후속세대 육성 지원**

3 타 재정지원사업과의 관계 등

□ 사업예산 집행 및 운영관리

○ 대학이 참여 중인 **타 정부재정지원사업***과 **사업 간 역할분담 및 중복투자 방지 대책 마련(연합형의 경우 참여대학별 작성 및 제출)**

* 특히, <반도체 관련 인재양성 방안('22.7.19, 관계부처 합동>에 포함된 **부처협업형 인재양성사업(반도체), 디지털혁신공유대학(반도체 컨소시엄) 사업 참여 대학은 필수 작성**

□ 사업성과 관리 및 분석

○ 대학별 **'반도체특성화대학 지원사업' 신규 참여에 따른 인재양성 성과 분석 및 관리체계 마련하여 제시**

* (예시) 반도체특성화대학 지원사업 참여를 통해, '반도체 전공 운영'으로,
⇒ '25년부터 융합전공 이수자 00명 배출 / '27년부터 반도체전공 이수자 00명 배출

4 상시 규제개선 지원체제 운영

○ 대학별(대학연합별) **반도체 인재양성 계획 추진**에 있어 걸림돌이 되는 **대학운영 규제**에 대하여는 **상시 수요 발굴 및 개선 추진**

※ **교육부 '대학규제개혁협의회'**를 통해 규제개선 수요 **심의**(위원장 포함 민간위원 17인, 교육부 1인 등 총 18인으로 구성) ⇒ **개선조치 시행**

○ **사업신청 단계부터 규제개선 수요를 발굴하여 검토, 개선 추진**

Ⅳ 평가 및 선정계획

1 신청대상 및 요건

○ **(공통)**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의 대학

○ **(유형1)** 단독형: 대학별 특성화 계획 수립

○ **(유형2)** 동반성장형: 대학 연합 단위 특성화 계획 수립

< 연합형 특성화 계획 수립 시 필수 포함 사항 >

① 대학 간 **사업 공동 추진** 및 **공동학사 운영**을 위한 **대학 간 협약서**

② 사업 추진체계에 **대학별 역할 분담** 및 **인적·물적 자원 공동활용 방안 및 계획**(시설, 장비 및 교원 등)

③ **참여대학 간 학사제도 공동 운영 계획**(예시: 대학 간 공동 교육과정 운영계획, 공동학과(전공) 운영계획, 공동/복수 학위/인증 수여 계획 등)

2 선정 평가

○ **(평가주체)** 사업에 대한 **전문성**이 **높은 산·학·연 전문가**로 **'평가위원단'을 구성·운영**하되, **평가의 공정성**을 위해 **상피제 적용**

※ 산학연 전문가는 산업계, 학계, 연구계 등 다양한 주체를 포함하여 구성

○ **(평가방법)** 제출서류, 신청자격 등 **사전검토** 후, **서면평가, 현장조사**(방문평가) **및 대면평가**를 통해 최종 참여 대상 선정

서면평가	⇒	현장조사* 및 발표평가	⇒	최종선정
'23.4		'23.4~5월		'23.5.

* 신청서 등에 제출된 대학별 교육/실습 여건 등 확인

○ **(선정기준) 사업계획 평가(서면, 현장+발표)**를 통해 평가위원단의 평가 **점수가 높은 사업단**을 선정

- **단, 평가점수가** 총점의 **70%미만일 경우, 선정 대상에서 제외** **(단독형, 동반성장형 공통적용)**

○ 평가지표(안)

영 역		항 목	단독형	동반 성장형
1. 사업 목표 및 비전 (80/80)		**사업 목표 설정의 적정성** - 대학의 특성화 방향 및 인재양성 목표 수준 타당성 - 대학 중장기 발전계획과의 연계성	80	80
2. 사업추진 기반 (250/150)		**기본 교육 여건** - 관련 학과(전공) 운영 규모, 학생 충원률, 취업 및 진학 현황/여건 등	50	50
		반도체 교육/실습 여건 - 장비 및 시설 현황 - 우수교원 확보(연구 및 기술개발 실적 포함) - 교육과정 운영 실적(인재양성 사업 참여 실적 등)	**200**	100
3. 사업추진내용	(1) 추진체계 마련 (100/125)	**사업 추진체계 구성/운영 계획의 적정성**	50	**75**
		반도체 인재양성 이행계획의 적정성 - 인재양성 계획의 구체성, 적극성/차별성 및 타당성 (기존 사업/체제와의 관계 등)	50	50
	(2) 교육과정 개발·운영 (100/100)	**교육과정 개발, 운영 계획의 적정성** - 교육과정의 체계적 개발 및 학문간 융합/연계 여부 - 특성화 방향 및 교원/인프라 계획 부합 여부 - 기업참여 및 협업 계획의 구체성 등	100	100
	(3) 교육인프라 구축 (100/150)	**우수교원 확보 및 활용 계획**	50	**75**
		교육/실습 환경 개선 계획 - 특성화 분야 연계 시설, 공간, 장비, - 실험실습 관련 안전관리 대책 포함	50	**75**
	(4) 학사 운영 (100/125)	**유연한 학사제도 운영 계획의 적정성**	**50**	**75**
		교원 인사제도 운영 개선 계획의 적정성	50	50
	(5) 학생 취업/진학 (50/100)	**학생 취업, 진학 지원 계획의 적정성** - 우수인재 유치 계획 등 포함	50	**100**
4. 예산 배분 및 집행계획 (120/70)		**예산배분 및 집행 계획의 적정성**	20	20
		중복투자 방지계획의 적정성 - 타 재정지원사업과의 역할분담, 중복투자 방지계획	**100**	50
5. 성과관리 계획 (100/100)		**성과관리 계획의 적정성** - (자율)성과지표 설정의 적정성 - 성과도출 및 환류 계획의 적정성	100	100
6. 가점		지자체·민간 대응투자의 구체성, 적정성	(100)	(100)
계			**1,100**	**1,100**

Ⅴ 사업관리 및 향후 일정(안)

1 추진 체계

□ 사업 운영 및 관리

○ **(교육부) 사업 기본계획 수립·추진**, 정부출연금 집행 총괄 관리

○ **(한국산업기술진흥원)** 사업운영 및 집행 관리 등 **전문기관** 역할

- 세부 시행계획 수립·추진, 선정평가 시행, 성과평가 실시·분석
- 전문가풀, 평가단(컨설팅단), 사업관리위원회 구성・운영 등

○ **(사업관리위원회)** 사업의 평가, 관리 등 주요 사항을 심의

□ 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반도체 인재양성 지원 협업센터 설치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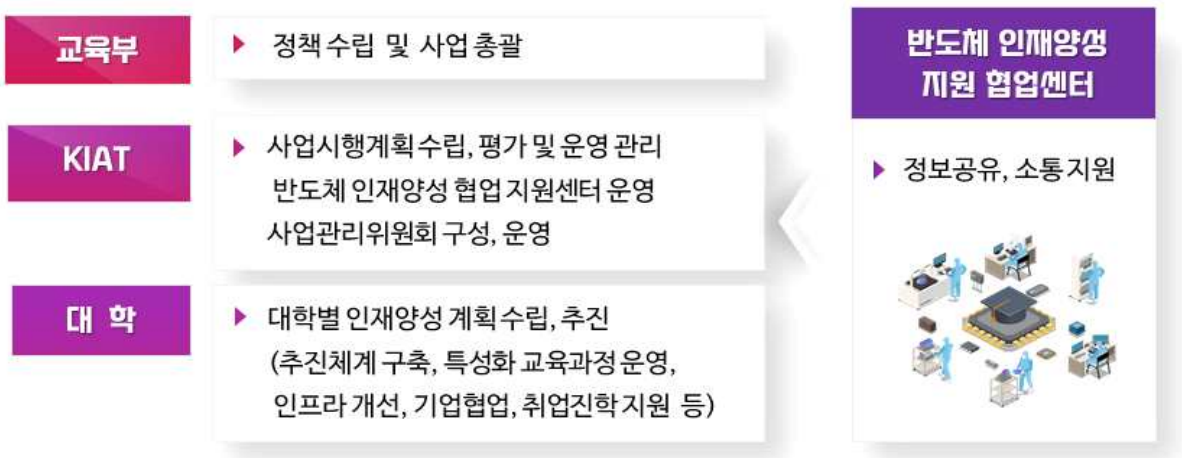
○ **(주요 내용)** 반도체 인재양성 이행상황을 지속 모니터링하고 **정부 및 교육계-산업계-연구계 협업 및 소통**을 위한 **지원기구 운영**

※ (근거) 반도체 인재 양성 협업 지원센터' 15개 관계기관 업무협약 체결('22.9.16)

○ **(역할 및 기능) 정례 협의 및 공동 협업 프로젝트 추진 지원**

* (예시) △'반도체 관련 인재 양성방안' 이행 관리, △반도체 산업 인력 수요 및 전망 고도화, △반도체 인재 양성정책 개선 자문, △인재 DB 구축 등

○ **(운영방식)** 반도체 특성화대학 지원 사업의 **관리비 일부를 활용하여 전문기관(한국산업기술진흥원) 내 별도 센터 구축**



2 예산 관리

□ 사업비 관리 및 집행, 결산

○ **(일반원칙)** 대학별 **사업비는 대학 내 별도 계정을 신설**하여 관리하고, 「산학협력법」 및 「국가연구개발혁신법」 등 **관련 규정 및 절차 준수**

* **「대학 재정지원사업 관리운영에 관한 규정」** 및 **사업 기본계획**에 부합되도록 운영

- **동반성장형 모델**의 경우, **사업비는** 사업계획서 상 참여대학의 계획에 따라, **전문기관에서 주관·참여대학에 직접 교부**

○ **(집행자율성)** 대학별 **사업목적 및 추진계획**에 부합하는 범위 내에서 **인건비, 장비구입비 등 주요 항목(비목) 간 제한 없이 집행 가능**

※ 단, △간접비(사업의 5%), △교원 인센티브(사업의 3%)만 상한 기준 준수

○ **(집행기간 등)** 사업비는 **매년 2월 말까지 집행하며,** 구체적인 **이월 범위 및 절차는 별도 지침**을 통해 **안내**할 **예정**

○ **(결과보고 및 정산)** 사업비 관리주체(대학)는 **매년 결과보고서**(사업비 집행내역 포함)를 **제출**하고, **집행 잔액**과 발생 **이자 정산** 및 **반납**

※ 동반성장형 모델의 경우, 주관대학이 사업비 집행결과 및 정산을 종합하여 보고

□ 재정 집행 책무성 확보

○ **(제재조치)** 사업 추진 중 [1]사업목적 외 예산 사용, [2]횡령 등 부정·비리가 확인되면 **사업비 삭감, 지원 중단 및 사업비 환수** 등 가능

- [1]법령 위반*, [2]입시비리 등 사업과 직접적 관련이 없는 부정·비리 사안도 대학 사회의 경각심 고취를 위해 일정 수준 제재 가능

* 「고등교육법」, 「사립학교법」, 「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」 등

○ **(후속조치 등)** 부정·비리 제재 결과 등에 따라 **발생한 재원은 사업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활용방안**을 **결정**

- **지원금 삭감으로 인해 대학별** 사업계획 이행에 필요한 **사업비가 부족한 경우, 대학 자체 부담이 원칙**

3 성과 관리

□ 성과관리 지표

○ **(개요)** 대학별로 달성해야 하는 **필수성과지표**와 대학별 특성화 계획에 따라 자율 설정·관리하는 **자율성과지표**를 **설정**하여 **점검**

○ **(필수성과지표)** 사업추진에 따른 **△대학 내 인재양성 체제 구축, △교원 및 인프라 개선 현황, △배출 인력의 규모·질 등 포함**

※ 필수성과지표(안): 세부사항은 연차평가, 중간평가 시행계획 수립을 통해 결정

영역	주요 내용 (양적, 질적 실적)	점검 시기 및 방법		
		연차	중간	최종
대학 내 지원체계	추진(운영) 체계 마련	○	○	○
	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	○	○	○
	학사 및 교원제도 운영 개선	○	○	○
인프라 구축/개선	우수 교원 유치 및 활용	○	○	○
	교육환경 구축 및 개선	○	○	○
기업협업	특성화 분야 연계 기업 협업		○	○
인재양성 규모 및 질	반도체 기업 취업/진출 실적		○	○
	반도체 특성화 대학 선호/만족도	○	○	○
	반도체 분야 진학/연구 실적		○	○
	배출 인력 규모		○	○
	배출 인력의 질(산업계 평가 등)			○
동반성장형 (유형2)	교육과정 공동운영 실적 (공동 교육과정 이수 현황 등)		○	○

○ **(자율성과지표)** 자율성과 지표는 대학 특성화 분야 등을 감안하여 **필수지표와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대학별 자율 설정**

□ 성과관리 계획

○ 성과평가 실시

- **(연차평가) 매 사업 기간 종료**(2월말) 후 **실적보고서**를 바탕으로 평가하여, **성과가 미진한 대학**에 대하여는 별도의 **컨설팅 실시**

※ **평가결과에 따라 차년도 사업비 가/감 예정,** 1차년도 연차평가 계획 별도안내 예정

- (중간평가) ’23~’24년 2년간 사업성과에 대한 **평가결과에 따라,** 성과 미진 시, 사업종료, **사업비 조정, 컨설팅** 등 **후속 조치 검토**

○ **컨설팅 지원**

- **산업계,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컨설팅단을 구성**하여, **연차·중간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사업 내실화 및 개선·보완 지원**

○ **반도체 인재양성 지원 협업센터 연계**

- **△성과관리 전반**에 **산업계 수요**를 **반영**하고, **△평가·컨설팅에서 도출**한 **대학 필요자원**에 대해 **산업계·연구계**와 **협의**

* 예시 : 기증 예정인 장비와 사내 강사 Pool을 조사하여 필요한 대학과 연계

□ 성과공유 및 확산

○ **(공유)** 컨설팅, 성과평가 등을 통해 **우수사례**를 **발굴**하고, **반도체 인재양성 관련 기관* 등**과 **성과 공유 및 확산** 추진

* 반도체 인재양성 관련 재정지원사업 참여대학 등 포함

○ **(포상)** 전문기관 및 반도체 인재 양성지원 협업센터 차원의 **워크숍·포럼 등을 추진**하고, **우수 교·직원에 대한 별도 포상 등 지원**

4 향후 추진일정(안)

○ 사업 기본계획 수립 및 공고 : ‘23.2월

※ 참여대학(연합) 가신청 접수: ’23.3월

○ 사업계획서 신청 접수 : ~‘23.4월

○ 선정평가 실시 : ‘23.4월~5월

○ 사업 협약체결 및 사업비 교부 : ‘23.5월

○ 교육과정 개설 준비 : ‘23.5～8월

○ 교육과정 운영 : ‘23.2학기(필요시 계절학기 활용)

○ 사업 결과보고서 제출 및 연차평가 실시 : ‘24. 3월

Ⅵ 반도체특성화대학 지정 절차 안내

□ 추진 근거

○ 반도체 산업은 **'국가첨단전략산업법' 상 국가첨단전략산업으로 지정**('22.11)되어 **정부는 동법 제37조에 따른 '특성화대학'을 지정**할 수 있음

- **교육부의 '반도체특성화대학'으로 선정된 대학**은 아래 절차를 거쳐 **'국가첨단전략산업법' 제37조의 특성화대학으로 지정될 수 있음**

※ △국가첨단전략산업법 제37조(국가첨단전략산업 특성화대학등의 지정 등), △동법 시행령 제45조(국가첨단전략산업 특성화대학의 지정 등), △특성화대학 등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운영지침 제6조(특성화대학 등의 통합공고 및 신청)

□ 지정 절차

추진절차	시행기관	일정(안)
사업 선정결과 확정, 제공	교육부 → 통합사무국	'23.5월 ~
↓		
지정위원회 운영	통합사무국	'23.6월 ~
↓		
지정검토 결과보고	통합사무국 → 교육부/산업통상자원부	'23.6월 ~
↓		
특성화대학 지정 확정	교육부/산업통상자원부	'23.6월 ~
↓		
특성화대학 지정결과 고시	산업통상자원부	'23.7월 ~
↓		
지정결과 통보	통합사무국 → 신청기관 / 전문기관	'23.7월 ~

□ 행정 사항

○ **특성화대학 지정을 신청**하고자 하는 **대학**은, **지원사업에 공모하면서 별도의 특성화대학 지원신청서**를 **대학**의 **총장 명의**로 **제출**

※ **특성화대학 지원사업 신청(수행)없이 지정만 단독 신청할 수 없음**

○ **'특성화대학 등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운영지침' 제5조**에 따른 **요건 부합 여부**와 **지원사업 선정**을 토대로 **특성화대학 지정위원회에서 지정**